격선	く	기저
'근 ㄱ	<u>י</u>	· / `

확	담임교사		
· 인			

–	,	'		인			
			()학년	()반(<u>)</u> 번	
				Ċ]름 ()	
위 학생은 아래와 기다.	같은 사유로 부득여	이하게	결석하게 되	어 본 결	석신고서를 >	제출합니	
1. 결석 기간 :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일간)							
2. 학부모 확인 ([결석사유 : 아래 중	에서 선택	백한 후 <u>구체적으</u>	.로 써 주세	<u>\$</u> .)		
질병으로 인한 경	별석 □ 미인정결	석 □(-	7, 무단결석) <i>7</i>	동 조사결식	╡□ 기타		
	2024 ર	<u> </u>	<u>일</u>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52	, - ,	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경	성보를 수집·이·	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도	년 항목		2	누집 근거		
결석 업무 처리	학년, 반, 번호, 성	讨명, 보호	5자성명,		2육법」제25조 제21조 및 제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사항 고지(의사 소전	년서, 진료	. 확인서 등 민	감정보가 3	포함된 중빙서	루 제출시)	
개인정보 처리목적	민감정보 항국	목		수집			
결석 업무 처리	의사진단서 또 의견서*	는	제21조 및	2육법」제2 : 제25조, 「 제23조 재1	25조, 동법 시 ⁵ 개인정보 보호 헝 재2호	행규칙 호법」	
* 의사 소견서, 진료 확							
	보호자(<u>박</u>		g)) 성명 인) 성명		명 또는 인) 명 또는 인)		
	대야출	논등학교	고장 귀하				
	담임	교사	확인서				
□ 결석사유 :							
□ 확인방법 가. 가정방문 (월 일 시	대하지	- 성명 :		,)	
	월 일 시 월 일 시		· 성명 :		`	,)	
다. 기 타 (월 일 시	대화지	- 성명 :)	
			작성자 :	담임교/	사	(인	

[참고사항]

구분				
질병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등)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7.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초과한 경우 8. 그 외 출석인정 결석과 병결을 제외하고 모두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미인정결석 시 처리 방침 1) 결석 1일~2일: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2) 결석 3일~5일: 가정방문 등 학생 출석,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 의뢰 3) 결석 6일: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면담 요청 4) 결석 7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기타 결석	1.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장기 결석	1. '5일 초과'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 학교장 재량휴업일은 포함하지 않음.			
참고	고 지각, 조퇴, 결과는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경우 (각 10회 역일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각각 별개로 함.)			